DEDICA
—DEDICATED LAWYERS—

개정 세관법: 수출입 기업이 알아야 할 7가지 새로운 사항

2027년 3월 1일부터 시행

근거: 2026년 8월 23일자 법률 제11/2026/QH16호(세관법 일부 조항 개정·보충)

www.dedica-law.com · david@dedica-law.com · 039 969 0012

DEDICA
—DEDICATED LAWYERS—

목차

본문 내용

01	통관 후 검사 기간	3
02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수출입 물품	4
03	납세담보 창고	5
04	보충 신고	6
05	컴플라이언스 관리	7
06	물품 보관 기간	8
07	수출 물품의 과세가격	9

DEDICA
—DEDICATED LAWYERS—

통관 후 검사 기간

통관 후 검사: 최대 20일, 1회에 한하여 최대 20일 추가 연장 가능

이전	2027년 3월 1일부터
세관 신고인의 사무소에서: 최대 10 근무일, 1회에 한하여 10 근무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 가능 통합 세관법(제54/VBHN-VPQH호) 제80조 제2항 a호	**검사 결정을 공표한 날부터 20일 이내, 1회에 한하여 2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 가능** 통관 후 검사 기간은 검사 결정에서 정한다~~. 이 기간은 최대 10 근무일을 넘을 수 없으며, 검사 시간은 검사 개시일부터 계산한다~~**. 검사 기간은 검사 결정을 공표한 날부터 20일을 넘을 수 없다**; 검사 범위가 넓거나 내용이 복잡한 경우 ~~서명한~~ 검사 결정권자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기간은 10 근무일을 넘을 수 없다;~~ **연장 기간은 20일을 넘을 수 없다.** 세관법 제79조 제2항, 법률 제11/2026/QH16호 제1조 제25항에 따라 개정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수출입 물품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수출입 물품은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함

이전	2027년 3월 1일부터
규정 없음	**제16a조 제1항: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수출입되는 물품은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세관의 검사와 감독을 받는다.**
	제16a조 제2항: 베트남 내 조직·개인이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외국과 물품을 매매할 때에는 전자 식별 및 인증을 해야 한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는 전자 식별 및 인증을 수행할 때 세관 당국의 전자상거래 데이터 처리 시스템과 연결할 책임이 있다.
	제16a조 제3항: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 보세창고 운영 기업, 운송 기업 또는 운송 기업의 대리인, 그리고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수출입되는 물품과 관련된 조직·개인은 물품에 관한 정보를 세관 당국에 제공할 책임이 있다.

세관법 제16a조, 법률 제11/2026/QH16호 제1조 제4항에 따라 신설

납세담보 창고

납세담보 창고는 더 이상 세관법에 규정되지 않음

이전	2027년 3월 1일부터
법에 납세담보 창고에 관한 규정이 있었음 통합 세관법(제54/VBHN-VPQH호) 제4조 제9항	**제4조 제9항 폐지; 제61조, 제62조, 제63조에서 납세담보 창고에 관한 내용 삭제** ~~제4조 제9항. 납세담보 창고란 통관은 되었으나 아직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수입 원료·자재를 창고 소유자의 수출 물품 생산을 위해 보관하는 창고를 말한다.~~ 제4조 제9항은 제1조 제1항 b호에 따라 폐지; 제61조, 제62조, 제63조는 제1조 제18항에 따름(법률 제11/2026/QH16호)

6개월
2027년 3월 1일부터

법 시행일 이후에도 재고로 남아 있는, 납세담보 창고에 반입된 원료·자재
수출 물품 생산을 위해 수입되어 납세담보 창고에 반입된 원료·자재가 이 법의 시행 시점 이후에도 재고로 남아 있는 경우, 이 법의 시행일부터 06개월 동안은 세관법 제54/2014/QH13호 제III장 제5절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법률 제11/2026/QH16호 제4조 제1항

보충 신고: 보충 신고를 할 수 있는 최종 시점이 변경됨

이전	2027년 3월 1일부터
통관 절차가 진행 중인 물품: 신고 서류의 직접 검사를 통지하기 전 통합 세관법(제54/VBHN-VPQH호) 제29조 제4항 a호	**통관 절차가 진행 중인 물품: 세관 검사를 통지하기 전** 세관 신고인은 ~~신고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 다음 각 경우에 보충 신고를 할 수 있다: a) 통관 절차가 진행 중인 물품의 경우: 세관 당국이 ~~신고 서류의 직접~~ 검사를 통지하기 전; 세관법 제29조 제4항 a호, 법률 제11/2026/QH16호 제1조 제12항 a호에 따라 개정
통관 완료 물품: 통관일부터 60일 이내이며 통관 후 검사·조사 결정 전 통합 세관법(제54/VBHN-VPQH호) 제29조 제4항 b호	**통관 완료 물품: 감독 구역을 통한 물품 반출 중지 결정 및 통관 완료 물품에 대한 검사 시점이 추가됨** b) 통관이 완료된 물품의 경우: 통관일부터 60일 이내이면서 ~~세관 당국이~~ **감독 구역을 통한 물품 반출 중지**, 통관 후 검사, 조사, **통관 완료 물품에 대한 검사**를 결정하기 전. 다만 보충 신고 내용이 수출입 허가 또는 물품 품질, 보건, 문화, 동식물 검역, 식품 안~~전에 관한 경우는 제외한다.~~ **전에 관한 경우는 제외한다**; 세관법 제29조 제4항 b호, 법률 제11/2026/QH16호 제1조 제12항 a호에 따라 개정

법을 준수하는 세관 신고인은 통관 절차 우선 처리와 검사 수준의 면제·경감을 검토받음

이전	2027년 3월 1일부터
컴플라이언스 관리에 관한 규정 없음	**법을 준수하는 세관 신고인은 우선 처리와 검사 수준의 면제·경감을 검토받음** **제17a조 제2항: 법을 준수하는 세관 신고인에 대해서는 수출, 수입, 출국, 입국, 통과 활동과 관련하여 통관 절차의 우선 처리, 그리고 세관 검사·감독, 통관 후 검사 및 그 밖의 업무 활동의 수준에 대한 면제 또는 경감을 검토한다.** 세관법 제17a조 제2항, 법률 제11/2026/QH16호 제1조 제6항에 따라 신설

물품 보관 기간

물품 보관 기간: 보세창고 24개월, 소량 화물(LCL) 집하장 180일

이전	2027년 3월 1일부터
보세창고: 12**개월**, 1**회에 한하여** 12**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 가능** 통합 세관법(제54/VBHN-VPQH호) 제61조 제1항	**보세창고**: **창고 반입일부터** 24**개월 이내** 보세창고**에** 반입된 물품은 반입일부터 ~~12~~**24**개월을 초과하여 보관할 수 없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보세창고를 관리하는 세관국장은 1회에 한하여 12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세관법 제61조 제1항, 법률 제11/2026/QH16호 제1조 제18항에 따라 개정
소량 화물(LCL) **집하장**: 90**일**, 1**회에 한하여** 9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 가능** 통합 세관법(제54/VBHN-VPQH호) 제61조 제3항(제2단락)	**소량 화물**(LCL) **집하장**: **집하장 반입일부터** 180**일 이내** 물품은 소량 화물(LCL) 집하장에 반입된 날부터 ~~90~~**180**일을 초과하여 보관할 수 없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집하장을 관리하는 세관 지국장은 1회에 한하여 9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세관법 제61조 제2항(제2단락), 법률 제11/2026/QH16호 제1조 제18항에 따라 개정

수출 물품의 과세가격: “판매 가격”에서 “실제 가격”으로

이전	2027년 3월 1일부터
수출 관문에 이르기까지의 물품 판매 가격 통합 세관법(제54/VBHN-VPQH호) 제86조 제2항	**수출 국경 관문에 이르기까지의 물품 실제 가격** 수출 물품의 과세가격은 물품이 ~~수출~~**수출 국경** 관문에 이르기까지의 ~~판매 가격~~**실제 가격**이며, ~~보험료 및~~국제 운송비 **및 국제 보험료**는 포함하지 않는다. 세관법 제86조 제2항, 법률 제11/2026/QH16호 제1조 제29항에 따라 개정
~~판매 가격~~	**실제 가격**

문의하기

DEDICA의 변호사 및 법률 전문가 팀이 언제든지 도와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문의하시면 전문적인 법률 자문과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기업 및 투자	상시 법률 자문	분쟁 해결
형사	인수합병(M&A)	상표 및 저작권

주소

호찌민시 쑤언호아(Xuân Hòa) 동 하이바쯩(Hai Bà Trưng) 거리 171번지 A&T 빌딩 11층

전화

+84 39 969 0012

이메일

david@dedica-law.com

웹사이트

www.dedica-law.com

지금 전화하시거나 메시지를 남겨 주시면 상담해 드립니다.